

2024
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우식대학교
WOOSUK UNIVERSITY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목 차

0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
02	전형일정	1
03	지원 자격	2
04	전형방법	6
05	수험생 유의사항	7
06	등록 및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	8
07	전형료	9
08	제출서류	9
[서식1]	입학지원 자격심사 신청서	
[서식2]	수학 기간 기록표	
[서식3]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	
[서식4]	제3국 수학 사유서	
[서식5]	재학기간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	

■ 변경사항

- 인원변경: 약학과 재외국민 4명→2명
- 시험과목 변경: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국어, 생물 공통 → 한약학과, 한의예과는 동일(2과목), 약학과 화학과목 추가(총 3과목)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약학대학	약학과	2	1	1
	한약학과	4	1	1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1	1	1
합계		7	3	3

▶약학교육 인증평가 인증획득(인증기간 : 2020. 1. 1. ~ 2023. 12. 31.)

▶한의학교육 인증평가 인증획득(인증기간 : 2020. 1. 1. ~ 2023. 12. 31.)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안내사항
입학원서 및 자격심사신청서 접수	2023. 7. 3.(월) ~ 2023. 7. 7.(금)	- 인터넷 접수(접수처 추후공지)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방문접수 :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팀(매일 09:00~17:00)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2023. 7. 11.(화) 17:00 까지	- 방문제출 :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팀 - 우편제출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외국민과외국인 담당자 (우)55338 ※ 우편제출은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자격심사 결과 발표	2023. 8. 4.(금) 14:00 예정	-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 (https://www.woosuk.ac.kr/WoosukEntrance.do) -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본교 소정의 전형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필기고사	2023. 8. 10.(목) 10:00 ~	- 수험자는 해당 고사장에 09:30까지 입실 -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3. 9. 1.(금) 14:00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3. 12. 18.(월) ~ 2023. 12. 21.(목)	- 온라인 문서등록(예치금 미징수)은 본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등록 - 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처리
미등록 층원 합격발표 기간	2023. 12. 28.(목)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
미등록 층원 등록마감	2023. 12. 29.(금)	
합격자 등록금 최종 납부	2024. 2. 7.(수) ~ 2024. 2. 13.(화)	-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납부처 : 전국 전북은행 및 농협 각 지점>

※ 상기 일정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1.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재외국민(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구분	지원 자격	기본 학력요건
영주교포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영주)	· 국내 · 외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외국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한 졸업(예정)자 중,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 · 고등학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연속 · 비연속 무관)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 · 국제기구) 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 ·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유치과학자의 자녀 또는 교수요원의 자녀(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 한 자의 자녀(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구분	지원 자격	기본 학력요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 ·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 국내 · 외에서 대한민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③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구분	지원 자격	기본 학력요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

① 입학 허용기간 :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② 국내 · 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③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2)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서식 4]는 예외적으로 인정
- 3)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하고, 유아원 · 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④ 최저 해외 이수, 거주, 체류, 근무기간

지원 자격	구분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이수	거주	체류 학생	근무	거주	체류 학생	거주	체류 학생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3년	3년	이수기간 3/4이상	3년	3년	이수기간 2/3이상	3년	이수기간 2/3이상	

※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는 위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다라도 체류 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⑤ 보호자의 근무기간, 거주(체류) 및 영주기간 인정기준

- 1) 해외이수기간 : 학교 성적표상에 기재된 이수기간
- 2) 해외거주기간 : 근무 및 재학을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3) 해외체류기간 : 재외국민등록부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기재된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4) 해외근무기간 : 재직(경력)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5)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거주 및 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

⑥ 이수기간 3년 이상 인정기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재학(연속·비연속 무관)
- 2)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파견당사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되어야 함
- 3) 영주교포 자녀는 영주권 취득시점 이후부터 인정
- 4)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3년 2월말(일본은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⑦ 해외(외국)근무자 인정기준

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⑧ 해외(외국)근무자의 자녀 인정기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상 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⑨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calendar year)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3)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인정
- 4)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5)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6)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연한 단축은 예외적으로 인정

- 7)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G: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⑩ 해외체류일수 인정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calendar year)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해야함
-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⑪ 영주 교포자녀의 범위 인정

- 1) 부모, 학생이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자
- 2) 부모, 학생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

⑫ 공무원의 범위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⑬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 등)의 임직원
- 3)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5)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6)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해외지사 해외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 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외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⑭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1)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2)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⑮ 현지법인 근무자/자영업자

- 1) 현지법인 근무자 : 현지 법인회사에서 근무(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
 2) 현지 자영업자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⑯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정(유학·교육·연수·훈련·출장·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

⑱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1)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⑲ 외국인 인정기준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2) 복수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⑳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자격

-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아래와 같이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4)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5)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는 불인정함
 ※ 거주기간, 학력,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전형 방법

1. 전형요소 및 필기고사 시간

모집단위	전형요소	과목별 배점	필기고사 시간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필기고사 100%	국어(100점)	10시 00분 ~ 10시 50분(50분)
약학과		생물(100점)	11시 10분 ~ 12시 00분(50분)
약학과	필기고사 100%	화학(100점)	12시 20분 ~ 13시 10분(50분)

※ 필기고사 각 과목별 40점미만, 필기고사 성적 평균 60점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 필기고사 장소는 추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람

※ 필기고사장 입실 완료 시간 : 09시 30분

2. 과목별 시험 범위 및 문항 유형

모집단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국어	한문을 제외한 전 범위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4지선다형/40문제
약학과	생물 I	생명과학 I	
약학과	화학 I	화학 I	

※ 필기도구 준비 : 컴퓨터용 사인펜 및 수정테이프

3. 선발기준

- ① 모집단위별 입학전형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성적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②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③ 필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④ 등록기간 전에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적 순위로 충원함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한약학과 한의예과	① 생물 필기고사 성적	② 국어 필기고사 성적	
약학과	① 화학 필기고사 성적	② 생물 필기고사 성적	③ 국어 필기고사 성적

※ 상기 이외의 동점자 발생 시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5. 수험생 유의사항

1. 고교졸업예정자는 2024년 2월말(일본은 3월말)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입학원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서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부정합

-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응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5.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오류, 기재 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입학원서와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입학원서와 수험표에 부착하는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은 모두 동일한 것 이어야 합니다.
 8. 접수된 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자격심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9.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중받은 국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거나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 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국고등학교 출신자**는 반드시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또는 학위인증센터에서 발급한 학위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련주소 <https://www.chsi.com.cn/>)
 12. 제출서류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본 모집요강에 명시된 제출 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모든 수험자격이 상실되며, 필기고사에 불참 시 ‘결시’로 불합격 처리 합니다.
 15. 수험생은 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시간에 대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필기고사 입실시간 및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충원발표 등)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우석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는 항상 공지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7.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등록납부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 등 제반 유인물을 합격자 발표 당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게 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9. 해당 전형유형의 모집단위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결격자 및 결시자는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자 조회는 불가합니다.(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1. 유선을 통한 추가합격자 개별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22.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중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합격증은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만 출력이 가능)
 23.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문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4.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에 추가합격 된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25.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잘못된 연락처 기재, 연락 시 미응답,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6.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7.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8. 신입생은 첫 학기(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9.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는 대학 재학 중 실험실습과정이나 졸업 후 진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0. 법령이나 본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を 취소합니다.
31. 본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학력조회 및 성적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원자는 학력조회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32.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6. 등록 및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등록

- ①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 될 수 있음)
- ②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문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불가 합니다.

2. 복수지원 허용 범위

- ①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②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처리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3. 복수지원 금지

- ①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② 타 대학간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전형 기간 내 모집단위간, 캠퍼스 간 복수지원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이중등록 금지

- ①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②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③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1개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5.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7. 전형료

학과	전형료		계
	자격심사료	필기고사료	
약학과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한약학과		150,000원	250,000원
한의예과		150,000원	250,000원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가 감면됩니다.(단, 온라인 접수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자격심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8. 제출서류

1. 공통 사항

- ① **국내발급 서류** : 국내 발급 각종 공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대조필을 필해야 합니다.
- ② **해외 발급 서류**
1. 해외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는 서류는 공증 받은 번역본(한국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외한국학교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공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대조필을 필해야 합니다.
 3. **중국고등학교 출신자**는 반드시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또는 학위인증센터에서 발급한 학위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련주소 <https://www.chsi.com.cn/>)
-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의 휴교 · 휴업 기간 인정
-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기간,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 해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기간 등에 대해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서식 5]를 제출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영주 교포 자녀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 근무 상사 주재원 자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영업자 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 과정 이수자 (재외국 민)
입학지원 자격심사 신청서[서식 1]	○	○	○	○	○	○	○	○	○
수학 기간 기록표[서식 2]	○	○	○	○	○	○	○	○	○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서식 3]	○	○	○	○	○	○	-	-	-
입학원서	○	○	○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	○	○	○	○	-	-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	-	-	-	-	-	-	-	○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	-	-	-	-	-	-	-
재외국민등록등본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	○ (부도학생)
여권 사본(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	○	○	○	○	-	○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부도학생)	-	○ (부도학생)	○ (부도학생)
영주권사본	○ (부도학생)	-	-	-	-	-	-	-	-
제3국 수학사유서[서식 4]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	-
재학기간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서식 5]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내본사발행, 해외파견 내용 기재)	○	○	○	○	○	-	-	-	-
※해외 발령일 및 귀입발령(예정)일 기재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 자 신고(승인)서	-	-	○	-	-	-	-	-	-
정부의 초청서 또는 추천서	-	-	-	-	○	-	-	-	-
현지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	○	-	-	-
보호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및 국가명 기재)	-	-	-	-	-	○ (법인근무자)	-	-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	-	-	-	-	○ (법인근무자)	-	-	-
기간 명시된 현지소득세 납입증명서	-	-	-	-	-	○ (자영업자)	-	-	-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	-	-	-	-	○ (부도학생)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	-	○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	-	○ (해당자)	-	-
학력인정증명서 (사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 교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	-	-	-	-	○	-	-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식 1】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입학지원 자격심사 신청서

성명	(한글)		성별	남 · 여	사진 (3cm×4cm)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 (해당란에 V 표시)		○ 영주교포자녀()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지원학과		학과						
구분	학교명		학교 홈페이지 주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총 재학 기간 :								
◆ 외국학교 총 재학기간 :								
◆ 국내학교 총 재학기간 :								
◆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								
◆ 고등학교 졸업 년월일(예정) :								
지원자	주소							
	성명		국적		직업		연락처	
보호자	주소							
	성명		국적		직업		연락처	
본인은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 별첨과 같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교에 지원하고자 입학지원 자격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수학 기간 기록표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성명 :
--------	-----------	------------	------

▶ 지원자 초·중·고 수학 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수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일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일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일					
영주교포 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3】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성명 :
--------	-----------	------------	------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 종료시는 ▲ 표시																	
	기 간	체류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지원자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총 계	년 개월 일																				
부(父) 성 명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총 계	년 개월 일																				
모(母) 성 명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총 계	년 개월 일																				
영주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영주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4】(해당자만 작성)

제3국 수학 사유서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성명 :	
학생	재학 국가		보호 자	근무 국가			
	학교명			직장명			
	학교 소재지(국가 및 도시)			직장 소재지(국가 및 도시)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 (학년 학기)					

- ▶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5】(해당자만 작성)

재학기간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성명 :
--------	-----------	------------	------

- ▶ 재학기간 중 특이사항(코로나-19 등)이 있는 경우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입학원서

별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 초				접수번호		*	
모집시기		수시				전형유형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지원 사 항	지원학과	학과							
	지원대상 (해당란에 √ 표시)	○ 영주교포자녀()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지 원 자 정 보	성 명	(한글)	성별	남 · 여	국적		사 진 (3cm×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예정, 졸업)							
	환불 계좌 (※지원자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 소	(우)							
연락처	E-mail								
	집전화			추가연락처 1					
	휴대폰			추가연락처 2					
외국학교재학기간	. . . ~ . . . (년 개월 일)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							전 형 증 지 첨부란 (본교발행)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자	* (인)	

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 초					
접수증 (수험표) 사진(3cm×4cm)	접수번호	*				접수자	* (인)
	모집시기	수시		전형유형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지원학과	학과					
	성 명						

※ 다음 페이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해당란에 V체크해 주세요.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교육사실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에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일반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 형, 모집단위명, 모집처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명코드, 졸업연도, 등록일 자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주민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 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 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농협, 전북은행	등록수납업무 대행	이름, 휴대전화번호, 수험번호, 등록금액, 가상계좌		
(※)진학아플라이	입시지원 및 통합충원관리 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전형, 지원모집단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처, 주소,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수시모집 등록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 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상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입학하여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자진 불응)을 전산 검사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① 6회 지원한 뒤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시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함
-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성대학교, 우 해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③ 한국에 계속주거하고, 한국전문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등
- ④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의 선별), 본인과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산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⑤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의 이수를 자의 경우, 동일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경우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일에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병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의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제2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지원자 이름

(서명)